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77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나라

변론 종결2021. 1. 22.

판결 선고2021.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D 지분 1/2에 관하여 2019. 3. 14.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3. 15. 접수 제88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년경 D과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8. 5. 15. 및 2019. 1. 31. D에게 카드로 대출(상품명: E)을 하여 주었는데(이하 이와 같이 지급한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D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원고는 D에 대하여 2020. 5. 12. 기준 26,612,086원의 위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은 2019. 3. 14.년경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 1/2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하여, 2019. 3. 15.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재산분할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갑 제4, 5, 7,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와 D은 1990. 6. 22.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2019. 3. 12.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와 D은 2015. 1. 16.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9.3. 기준 평균 시세는 1,120,000,000원 정도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1. 16.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96,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이, 2016. 6. 1.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1,6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이, 2016. 9. 12.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일 기준 주식회사 F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는 617,774,989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D과 피고는 24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는 28년 이상 D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자녀 둘을 양육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하면서 D과,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담하는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근저당권부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약정한 점(자녀들은 당시 성인이었으나 생활비용 내지 취업준비 비용을 피고가 지원하기로 함),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부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녀 둘과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이희경

별지